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포상금 등의 지급에 대한 인용 조항의 오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오기사항 정정(안 제7조제1항,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)
 - 안 제7조제1항 : 본문 중 제9조 → 제10조, 단서 중 제4조제2항 → 제3조제2항

5. 검토내용

- 포상금 등의 지급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및 개최 제외경우에 대한 인용 조문의 오기사항

및 안 별지 1호부터 5호까지 관련 조항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.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인용 조항에 대한 단순한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